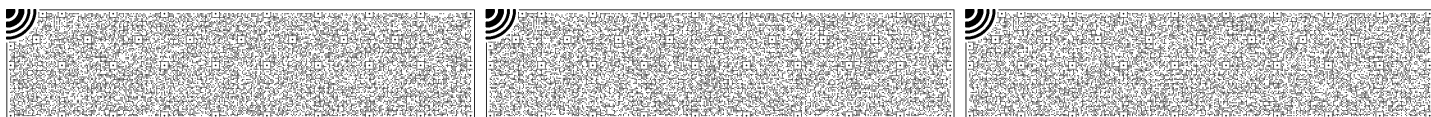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147호

의 안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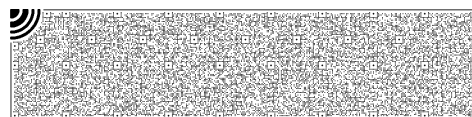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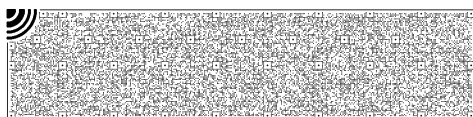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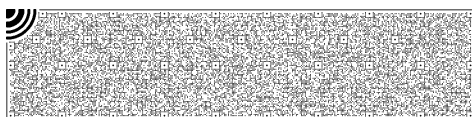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5. 18.

주 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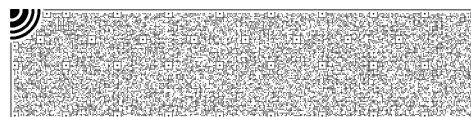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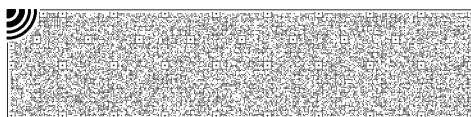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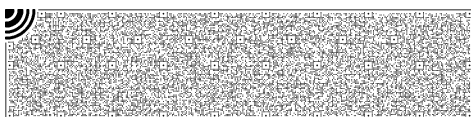
【별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202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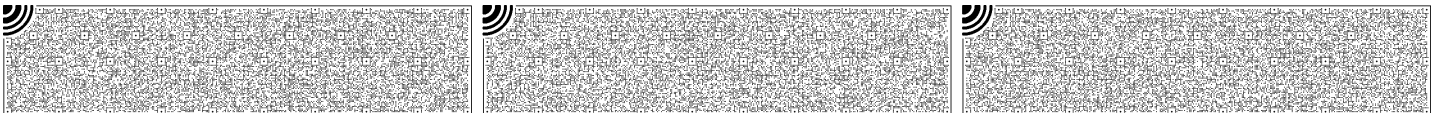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관련제도	2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2
②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및 고시 제도	6
③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제도	8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9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자치법규 정비	9
②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강화	16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체계 강화	17
IV. 조치사항	19
[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Ⅰ 추진 배경

- 국민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도입('08년~)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민원처리담당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
 -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행정안전부 지정·고시(세부내용 붙임1 참조)
 -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
-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민원신청서 서식에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당수 지방정부 민원신청서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은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를 인지하기 어려움
 - ※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안정화 단계로 전환(행정안전부 의견 '26.3월)
 - 이로 인해 민원인이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하거나, 민원처리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 민원사례(국민신문고) >

- ▶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24.1월)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료인데 ○○군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다시 확인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24.4월)
- ▶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인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25.3월)

-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재정비하는 제도개선 추진 필요



II 관련 제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 개요

- **(목적)**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식)**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기관 간 공동으로 활용하여 민원을 처리

※ (이용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40개 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858개 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공동으로 이용('26.1월 기준)

□ 운영체계

- **(정보지정)** 행정안전부는 민원 편의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이용 행정정보를 지정·고시

※ (대상정보)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181종**(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4, '25.12월)

- **(이용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희망기관은 행정안전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승인

- 승인을 받은 기관은 **공동이용포털** 또는 **자체운영시스템**(사회보장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 **자치법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 현황**

- **(운영근거)** 조례·규칙 등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하여 운영

※ (공동이용 활용 주요 민원) 출산·양육지원, 입학·교육비지원, 청년정착·주거지원, 복지·바우처 지원, 시설이용·사용신청, 이용료 감면신청 등

< (예시) 「**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6조의2(택시 교통카드의 발급)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서식)**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신청서에는 첨부서류를 제출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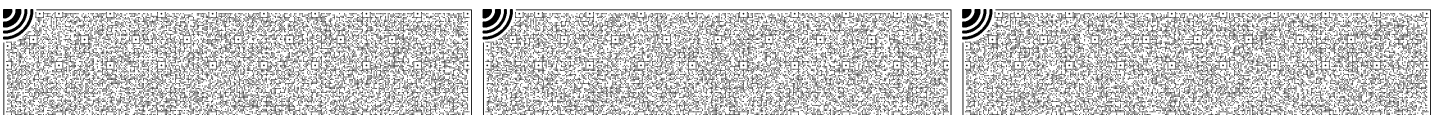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24조 제1항 별표4(<서식의설계기준> 4. 항목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항목을 둔다.

- 이에, 민원신청서 서식에 ①신청인 제출서류와 ②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

< (예시) OO군 용자신청서 >

첨부 서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공통사항>		<시설자금(추가사항)>	수 수 료 없 음
	① 사업계획서 ② 업종 증빙서류(제조업 예외) ③ 대출상담확인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① 신규시설 구입하는 경우 - 계약서 및 신청시설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기타서류(해당시 제출)> ① 가점사항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①사업자등록 증명 ②국세 납세증명서 ⑤건축물대장 ⑥공장등록증명서		③지방세 납세증명서 ④표준재무제표증명 ⑦중소기업확인서 ⑧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정보주체 사전동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

< 「전자정부법」 >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방식) 민원신청서 내 '사전동의' 항목에 표시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사전동의서를 작성·제출(서면 또는 모바일)

< 사전 동의 방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와 별개로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민원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제공을 요구(본인 정보 제공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인정보 제공동의 필요

< 「민원처리법」 >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권장 사항

- (자치법규에 규정) 조례 등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 규정 < (예시) 00 조례 >

제00조 시장은 제00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민원신청서 서식) ①신청인 제출서류와 ②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③사전동의 항목 표시

< (예시) 행정안전부 권장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만 이용하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적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OO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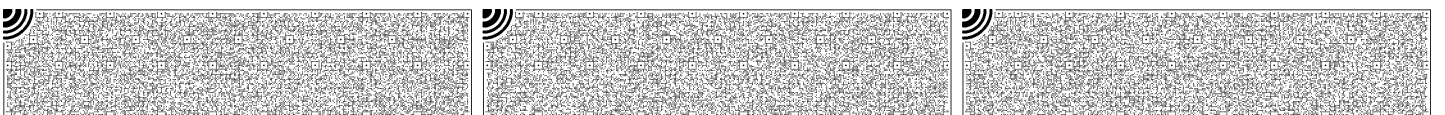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적등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 본인은 OO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OO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 기관: 법원행정처) ←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동의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및 고시 제도

□ 개요

- **(목적)**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정보의 변동사항을 관보 고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
-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운영되는 자치민원의 처리기관·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표

< 자치민원 처리기준표 고시항목 >

소관 기관	민원명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근거 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발급물 내용
부 처 명	민원명	방문, 인터넷 우편등	누구나, 본인 또는 대리인 등	법률 등	접수처리 기관 및 민원 처리기한	민원인 제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등	금액	신고증 등

- **(관리)** 광역지방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기초지방정부의 민원까지 포함하여 관리·고시
- ※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원처리기준표 관리·고시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
- ※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을 위해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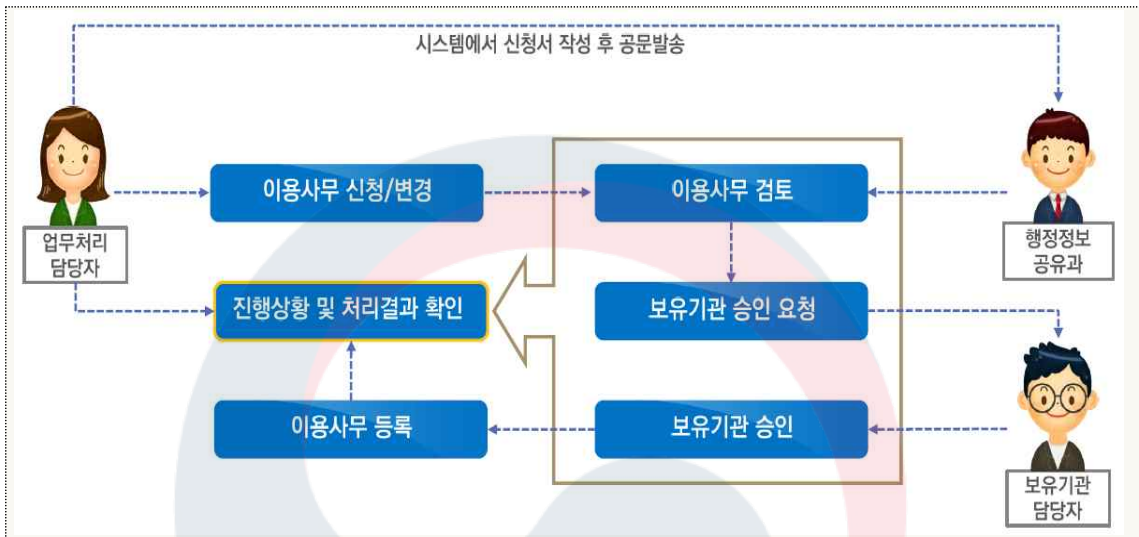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 행정정보 공동이용과의 관계

-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정보보유기관과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사무가 신설·변경되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가 각 해당 이용 사무별로 신청·승인 절차를 진행

< 공동이용 사무 신청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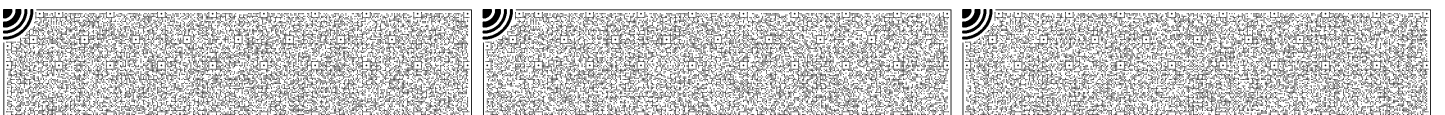
- 그러나,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고시된 민원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

※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는 자치민원사무를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도록 권장

< 「전자정부법」 >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3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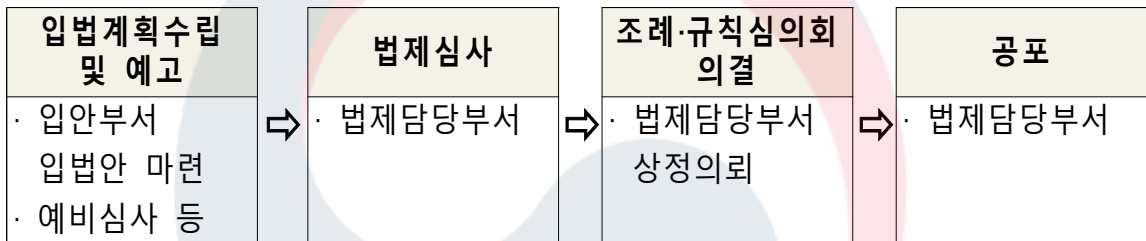
□ 입법 절차

- 자치법규 입법은 ①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②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③조례안의 공포 순으로 진행

□ 내부심사

- (입안부서) 부서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마련한 자치법규안을 법제담당부서에 제출
- (법제담당부서) 부서협의, 입법예고 등 준수여부, 입법 필요성 등 입안기준 적합성 여부, 부칙규정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부심사 절차 >



※ 행정안전부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배포
→ 법제담당부서에서 법제심사시 활용

< 2022년 자치법규업무매뉴얼(법제담당부서 심사) >

항목	심사내용
1. 형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형식 및 소관사항(법령,조례 또는 규칙사항)여부 ·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 여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확인 등
2. 예비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 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어쓰기, 법규통일여부 등) · 입법선례와의 관계 등
3. 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의 축조 검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 준비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등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실시 및 현황>

우리 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26.2.24.~4.2)

- 대상 :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 내용 : 민원신청서 서식 및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현황
 - ※ 공동이용 행정정보 표시·사전동의 항목 기재 여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현황 등
- 조사결과 : 233개(10개 미제출) 기관에서 3,014개의 민원사무 제출
 -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표시 미흡, ② 사전동의 절차 미비, ③ 담당자 제도 인식 부족 등 다수 기관에서 부정확한 안내 및 제도 미정착 확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자치법규 정비

문 제 점

□ 민원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표시 불명확

-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함을 민원신청서 서식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나,
 - 공동이용 정보임에도 민원인 제출서류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류 제출의 구분 없이 '구비서류'로만 표시되는 등 구분 미흡

<실태조사 결과>

- ▶ 공동이용 행정정보임에도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기재된 경우 **168개 기관(999종)**

[○○군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규대상자) ↵ 4. 실거주 확인 증빙서류 1부.(필요시) ↵	→	공동이용 행정정보 ↵
-------------	---	---	-------------

<실태조사 결과>

▶ 신청인 제출서류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서류로만 기재된 경우 **159개 기관(1673종)**

[○○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신청서]

첨부서류: 1.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 수료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2. **교육비 납입 증빙 자료 1부.** → **공동이용 행정정보**
 3. 거주확인 및 농업경영체 증빙자료(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군 보조기기 수리센터 지정 신청서]

※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1부.
 2. 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민원신청서 상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 없이 민원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3개 기관(9종)**

[○○구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와 교육기관의 매입(납입) 확인	민원처리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를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일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학교,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군 귀농귀촌 지원신청서]

본 신청서는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민원처리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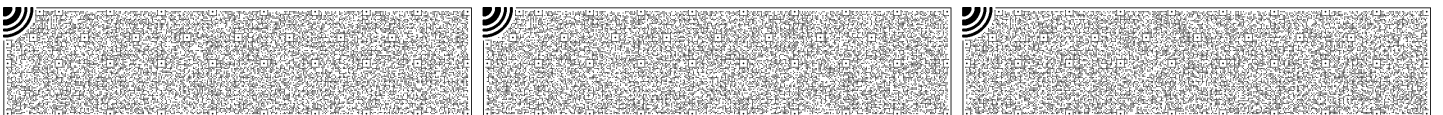
사업신청과 관련
 귀농귀촌인으로

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환수 규정에 따라 회수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확 인 : 이장 성명 (인) 신청인 : 성명 (인)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확인내용	확인자(직.성명)	서명
주소,생년월일, 거주확인	적합.부적합	
귀농.귀촌 여부 확인	귀농 / 귀촌	



□ 사전동의 항목 누락 및 서식 반영 미흡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민원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시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안내되어야 하나,
 - 민원신청서에 사전동의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게 안내

<실태조사 결과>

▶ 민원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 누락된 경우

☞ 147개 기관(596개 민원사무)

[○○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수도요금 관련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수도권요금 관련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소상공인 수도권요금 관련 신청서에 기재한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에 따른 5년
- 신청인은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도권요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동의 : 동의

개인정보 동의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항목은 누락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 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자치법규 내 민원신청서 서식 부존재

- 민원신청서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자치법규에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원인의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실태조사 결과>

- ▶ 조례 상 신청서를 제출받아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민원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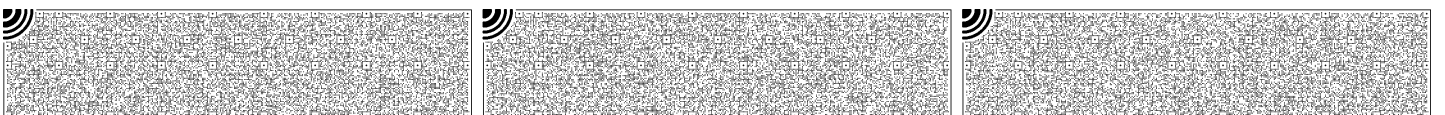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폐업 사실증명
5. 입금계좌 확인정보

[○○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양봉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양봉산물 생산자, 양봉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생산자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선방안

1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지방정부)

-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필요한 자치사무를 전수 조사하고, 자치법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수립
 - (대상) 민원인의 신청을 통해 처리되는 자치사무 중 공동이용 행정 정보가 포함된 자치사무
 - (방법) 자치법규 및 민원서식 운영현황 전수조사 후 정비계획 수립

- ① 자치법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자치법규에 '민원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③ 민원신청서 서식에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동이용 행정 정보)이 구분되어 있는지 여부
- ④ 민원신청서 서식에 사전동의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급적 민원신청서에 포함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서식으로 징구가능)

2 자치법규 제개정 시행(지방정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법령 등과 일치하도록 자치법규 및 민원 신청서 서식에 명확히 반영(시행결과를 내부 보고)

< (예시) 조례 내 처리기준 기재 및 민원신청서 서식 반영 >

▶ 조례 등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처리기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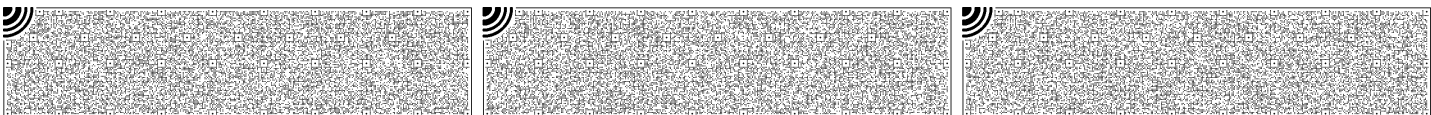
제00조 시장은 제00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민원신청서 서식에 공동이용 행정정보 명확화(행정안전부 권장 서식 참고, p5)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적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00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강화

문 제 점

1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관리 미흡

- 광역지방정부는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제도 운영이 미흡
 - 특히, 일부 기초지방정부는 민원사무를 전혀 등록하지 않는 등 등록 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

<실태조사 결과>

▶ 일부 광역지방정부의 경우 운영민원 수 대비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사무 수가 매우 낮은 수준

< 일부 광역지방정부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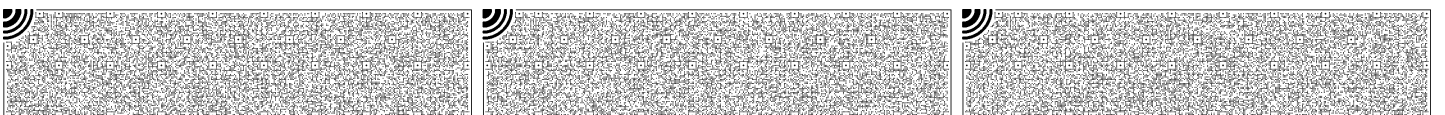
구분	운영민원 수 (a)	등록민원사무(b)			미등록 민원 수 (a-b)	미등록 기초 지방정부 수
		계	광역	기초		
광역1	39	25	12	13	14	3
광역2	111	6	5	1	105	10
광역3	417	102	11	91	315	13
광역4	208	9	8	1	199	14
광역5	260	20	18	2	240	12

* 우리 위원회 실태조사 시 광역·기초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운영 민원 수

- 실제 운영민원이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민원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
 - 민원인은 필요한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서류제출 및 재방문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 발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 미흡

-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고시된 민원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나,
 - 실제 운영 민원이 기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동이용 승인 절차가 반복되는 등 행정비효율 발생



개선방안

1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지침 마련(광역지방정부)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의 통일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기초지방정부에 배포

※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제공)을 참고

2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지방정부)

-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자치사무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고시

※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에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반영 및 고시 요청

- (대상)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 중인 민원사무

- (방법) 미등록 민원사무 등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고시

- ① 전수조사 결과, 자치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 등록
- ②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민원사무를 자치민원처리 기준표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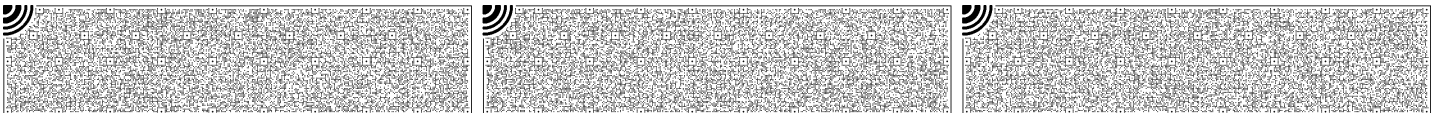
3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체계 강화

문제점

1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검증 절차 부재

- 자치법규 제·개정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여부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부재

- 사전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가 일관되지 않고,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



2 민원처리담당자 제도 인식 부족에 따른 운영 혼선

- 실태조사 결과, 일부 민원처리담당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

<실태조사 결과>

- ▶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포함된 민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한 사례 ☞ 19개 기관
- ▶ 공동이용 행정정보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회신한 사례 ☞ 148개 기관(613종)
- ▶ 공동이용 행정정보 제도의 적용범위 및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한 사례 다수 발생
- ▶ 시스템 권한 미보유를 사유로 공동이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례 ☞ 1개 기관

- 민원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 행정정보 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담당자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운영상 혼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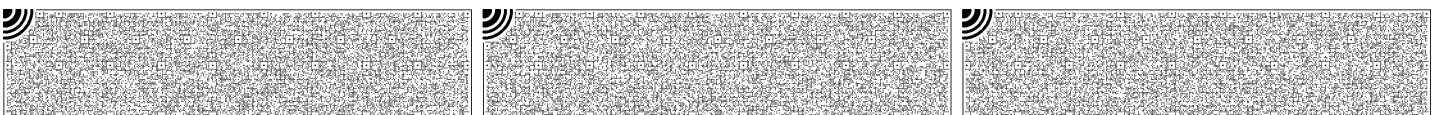
개선방안

1 자치법규 심사 체계 강화(행정안전부)

- 자치법규 제·개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업무매뉴얼(행정안전부 제공)'에 공동이용 행정정보 반영여부를 심사내용에 명시

< (예시) 자치법규 업무매뉴얼(안)>

구분	항목	심사내용
현행	2. 예비심사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개정안	2. 예비심사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여부(「전자정부법」 제36조)



② **민원처리담당자 교육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정부)

- 기관 내 민원처리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연 1회)
 -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자료 배포
 - (지방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한 민원처리담당자 교육 실시(연 1회)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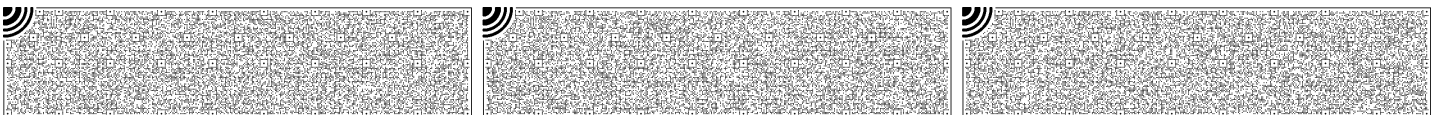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자치법규 정비		
- 자치사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지방정부	'26. 12.
- 자치법규 제·개정 시행(내부 결과보고)	지방정부	'27. 3.
② 자치민원처리기준표 운영 강화		
- 광역지방정부 자체 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	광역 지방정부	'26. 12.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현행화 ※ 전수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변경사항 반영 ※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에 등록·고시 요청	지방정부	'27. 6.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체계 강화		
- 자치법규 업무메뉴얼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심사 항목 반영	행정안전부	'26. 12.
-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배포	행정안전부	'26. 6.
- 민원처리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지방정부	'26. 12.



붙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84호(2025. 12. 31. 일부개정)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초·중학교졸업증명, 초·중학교졸업예정증명
외교부(1)	여권
통일부(2)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10)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인감증명, 주택지방세납세자현황정보
농림축산식품부(4)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산업통상부(4)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인사혁신처(1)	사전등록어학성적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의사상자증명서
기후에너지환경부(1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고용노동부(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성평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국토교통부(3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소유현황정보
해양수산부(9)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가보훈부(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재외동포청(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판정신체검사통보서(시력)
경찰청(3)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정보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지식재산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8)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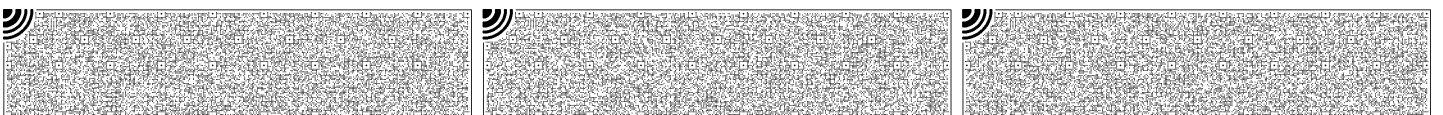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국사편찬위원회(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진위확인정보
공무원연금공단(2)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 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 총 181종

부 칙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감증명, 의사상자증명서의 개정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



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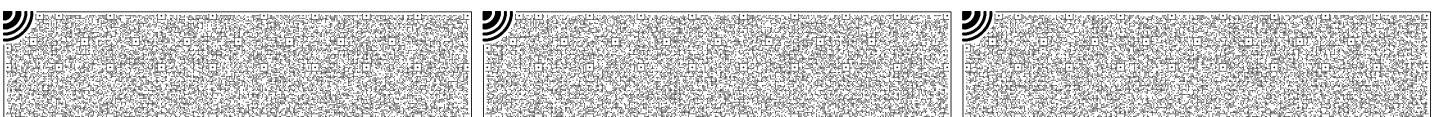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4조(공동이용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의 명칭
2.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의 명칭 및 그 보유기관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공동이용의 목적
5. 공동이용의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6.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정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의 제한
2. 공동이용의 방식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확충
4.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의 구성방법 및 내용
5. 행정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전달체계
6.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비용 부담
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 방식
8.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나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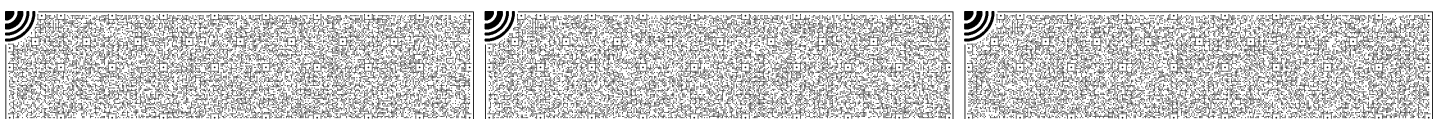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청기관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또는 보호장치나 그 밖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을 통하여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민원처리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정부법」 제39조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3. 「관세법」 제116조
- 4.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6.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 7. 「주민등록법」 제30조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 10. 「건축법」 제32조
- 11. 「상업등기법」 제21조
-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제13조(민원 신청의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 관련 법령·편람과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 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 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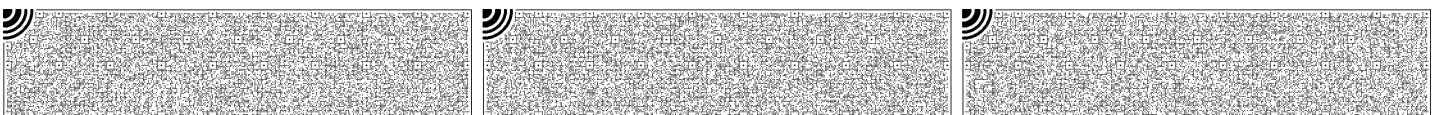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 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의 작성,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 필요 사항의 통보 접수, 관보 고시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게시와 민원처리기준표 반영



-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개정 요청
-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변경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까지의 잠정적인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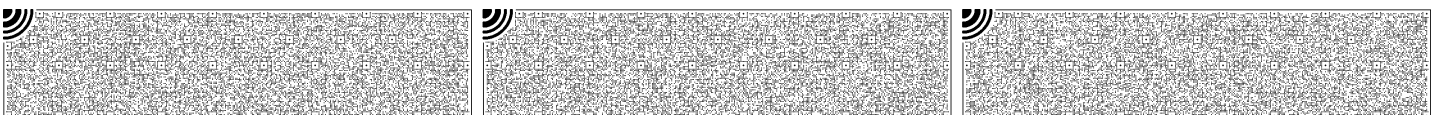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⑦ 서식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 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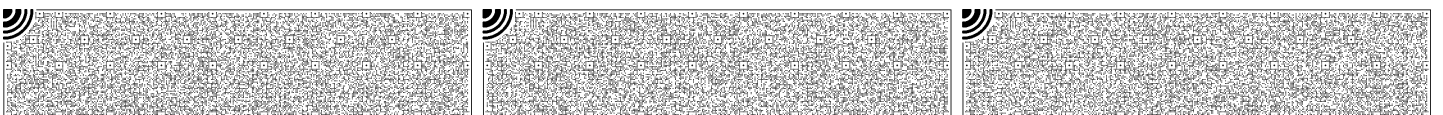


2.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 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4.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서식의 설계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설계 기준				
1. 기본 형식	<p>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안문과 시행문을 같음하는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으로 작성한다.</p> <p>나. 그 밖의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의 서식에는 접수(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등의 해당 사항과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를 표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처리 가능 여부 표시문안 예시: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다. 모든 서식에는 그 서식에 관한 기본정보(근거 법령 등과 서식 호수)를 표시해야 한다.</p>				
2. 용지 여백	<p>상단 및 좌·우측은 20mm, 하단은 10mm로 하되,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p>				
3. 쪽	<p>서식이 2쪽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서식 우측 상단에 그 쪽수 등 쪽 구분 표시를 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 구분 표시 예시 1: (앞쪽), (뒤쪽) - 쪽 구분 표시 예시 2: (3쪽 중 1쪽), (3쪽 중 2쪽), (3쪽 중 3쪽) <p>■ 000법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개정 0000. 00. 00.> 00000 신청서</p> <p>※ 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접수번호</td> <td style="width: 25%;">접수일시</td> <td style="width: 25%;">처리기간</td> <td style="width: 25%;">30일</td> </tr> </tabl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4. 항목란	<p>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항목을 둔다.</p> <p>나.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만들지 않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신원조회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란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만들 수 있다.</p> <p>다. 주소변경 시 법령에서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 허가증·인가증·자격증·신고확인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않는다.</p> <p>라. 비고란은 별도로 적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p> <p>마. 항목의 구분에 따른 하위 항목은 위계에 따라 배열하되 3단계를 초과할 수 없다.</p> <p>바. 항목의 일련번호(① 등)는 적지 않되, 필요에 따라 적는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적는다.</p> <p>사.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순서를 고려하여 상·하·좌·우로 배열하고 계산부호를 붙일 수 있다.</p> <p>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글자별, 숫자별 구획은 만들지 않는다.</p>				
5.~10. '생략'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5월 18일

위원장 정 일 연

위원 한 삼 석

위원 조 소 영

위원 이 명 순

위원 홍 봉 주

위원 김 태 영

위원 신 대 희

위원 권 석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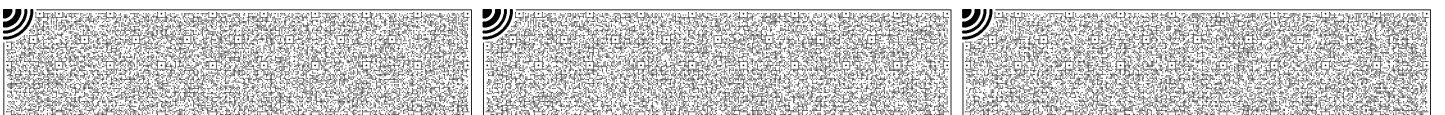
위원 최 명 규

위원 이 흥 주

위원 이 태 한

위원 김 바 울

위원 신 상 욱



정본입니다.

2026. 5. 18.

국 민 권 의 위 원

